

第241回國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會議錄 第 7 號 (臨時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03年7月31日(木)

場 所 第3會議場(145號)

議事日程

1. 제17대국회의원총선대비선거구제도와국회의원정수등에관한각교섭단체의의견제출촉구의건

審査된案件

1. 제17대국회의원총선대비선거구제도와국회의원정수등에관한각교섭단체의의견제출촉구의건 …………… 1

(16시50분 개의)

○**委員長 睦堯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국회(임시회) 제7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田春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睦堯相**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새로 보임해 오신 **鄭義和**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義和 委員**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1. 제17대국회의원총선대비선거구제도와국회의원정수등에관한각교섭단체의의견제출촉구의건

(16시51분)

○**委員長 睦堯相** 의사일정 제1항 제17대국회의원총선대비선거구제도와국회의원정수등에관한각교섭단체의의견제출촉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게 된 이유는 우리 위원회 활동을 좀더 독려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거구획정위원장으로부터 선거구제도와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여야 합의 촉구서한을 받은 바가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각 교섭단체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촉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도 국회의원 선거구제도와 의원 정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이 각 당에 돌아가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당론을 주도해 주시고 또 빨리 각 당의 당론을 확정지어서 우리 정치개혁특위에 보내 주시도록 도와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마는 아직껏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명의로 각 당 대표와 또 각 당 교섭단체대표위원에게 국회의원 선거구제도와 의원 정수 등에 관한 당론을 빨리 마련해서 제출해 달라는 촉구서한을 오늘 채택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金容鈞** 위원으로부터 촉구서한 내용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容鈞 委員**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서 **睦堯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각 당 대표 및 교섭단체대표위원에게 보내는 제17대국회의원총선대비선거구제도와국회의원정수등에관한각교섭단체의의견제출을 촉구하는 서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각 당 대표님 및 교섭단체대표님 귀하!

국가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활동하시느라 노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이제 머지않아 제17대 국회의

원 총선이 다가 옵니다만 선거구제도와 국회의원 정수 등에 관하여 각 당의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한 관계로 우리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선거구제도와 의원 정수에 대해 여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순조롭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정치개혁특위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종전 인구편차 허용기준 1 대 4의 판례를 바꾸어 선거구간 인구편차 비율이 1 대 3의 범위를 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 및 평등권의 침해로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입법부가 2003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선거구구역표를 개정할 때까지 선거구구역표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 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현행 비례대표제는 1인1표제도를 채택하여 지역구 선거에서 표출된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그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로 의제하여 의석을 배분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선거의 원칙에 어긋나고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를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며 유권자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의 개정 없이 금년 12월 31일을 넘길 경우 제16대 국회의원 전체의 자격이 문제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우리 정치개혁특위가 원만한 활동을 통하여 여야 간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선거구제도와 의원 정수에 대한 당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우리 위원회로서는 정기국회 기간 중에는 국정감사와 예산·결산 심사 등 위원들의 의정활동이 많아져 우리 위원회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복잡한 당 내외 사정으로 어려우시겠지만 선거구제도와 의원 정수에 대한 당의 의견을 조속히 확정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7월 31일

정치개혁특별위원장 陸堯相

이상입니다.

○委員長 陸堯相 그러면 지금 金容鈞 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대로 제17대국회의원총선대비선거구제도와국회의원정수등에관한각교섭단체의의견제출촉구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宋永吉 委員 시한을 명시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까?

○委員長 陸堯相 이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거 전 6개월이 10월 15일부터 개시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그 이전에 우리가 이것을 확정짓는 것이 정치 신인들의 등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또 선거구가 분할되거나 또는 통합되거나, 역시 해당 지역 정치 희망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이전에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 것이 본인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의 똑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10월 10일은 너무 늦고, 늦어도 9월 중순 쯤으로 시한을 박아서 촉구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千正培 위원님 말씀하세요.

○千正培 委員 우리 위원장님 명의로 각 교섭단체에 편지 보내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위원들 스스로가 각자가 속한 당에 돌아가서 각 당의 의견을 만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 민주당에서는 현재 우리 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 안을 만드는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대체로 8월 말까지는 우리 당 개혁특위 위원들의 시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10월 15일 이전에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할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본회의 통과가 아니라 법률이 시행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우리로서는 10월 초에는 의결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역산해보면 적어도 9월 15일 이쯤에는 각 당의 의견이 들어와야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다른 절차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돼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선거구 획정을 해 와야 할 것이고 또 그렇다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의견만 제시할 뿐이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지 모르

겠습니다마는 정식으로 법안을 의결해서 본회의에 가야 될 테니까 이런 등등의 절차를 다 감안해서 역산해 본다면 사실은 한 8월 말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늦어도 한 9월 15일 정도까지는 확실히 올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委員長 睦堯相** 또 다른 말씀 있습니까?

○**全在姬 委員** 9월은 정기국회가 있고 특위와 상임위원회가 중복되고 국정감사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이 좀 어렵더라도 위원장님 명의를 1차 촉구공문은 8월 말까지로 시한을 정해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睦堯相** 趙培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趙培淑 委員** 저도 全在姬 위원님의 제의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우리 정개특위에 공문이 왔는데 여기 보니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개특위에 요구하는 사항이 국회의원선거제도, 그다음에 의원 정수 조정, 적어도 이 2개를 우선적으로 정해서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정감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은 한 달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8월 말까지로 못 박아서 제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睦堯相**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선거구제도 뿐만 아니라 인구편차를 얼마로 하느냐 하는 가이드라인도 우리가 여기에서 정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보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각 당의 의견을 우리가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같이 해서 빨리 당론을 확정하여 보내 달라고 촉구할 예정인데 여러 위원님들, 지금 몇분의 말씀대로 8월 말까지 시한을 잡아서 촉구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월 말까지 당론을 확정해서 보내 달라고 하는, 조금 전에 金容鈞 위원께서 설명한 내용의 촉구서한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보임해 오신 李揆澤 위원님이 인사를 제대로 못 하셨는데 우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李揆澤 委員** 李揆澤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睦堯相** 沈揆喆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沈揆喆 委員**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논의하신 바대로 국회의원 정수 문제, 지역구 인구조정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개특위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각 당이 확정된 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또 국회의원들도 지금 우왕좌왕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의 인구편차와 비교해서, 예컨대 9만으로 했을 때 정수가 어떻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고 9만 5000, 10만, 10만 5000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주시면 각 당이 당론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睦堯相** 자료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는데요.

○**沈揆喆 委員** 조금 세분화해서 말이지요.

○**委員長 睦堯相**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지요.

○**金容鈞 委員** 제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9만, 9만 5000, 10만, 10만 5000 이런 식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이것이 잘못하면 귀신 떡 갈라먹듯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선거구 최하한선 9만이라는 것이 1997년도의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선거구 인구 허용편차가 4 대 1이 되어야 된다는 판결이 나오고 그 이후에 약 3년간의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서 2000년 2월에 대규모의 정치개혁을 하면서 국회의원 자리 26개를 날리면서 설정한 기준이 9만이라는 최하한선입니다.

이 9만이라는 최하한선은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정했던 선인데 2001년 10월에 헌법재판소에 제3기 헌법재판관이 들어서면서 4 대 1이 갑자기 3 대 1로, 헌법은 개정된 바가 없는데 헌법해석이 4 대 1에서 3 대 1로 바뀌면서 이런 큰 혼란이 야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치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역선거구의 안정성, 2000년 2월에 뼈를 깎는 아픔을 통해서 국회의원 26석을 없애가면서 만들었던 지역선거구의 최하한선 9만이라는 선을 함부로

무너뜨릴 수 있는냐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숫자놀음으로 쉽게 9만이다, 9만 5000이다, 10만이다, 10만 5000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수학으로 이 문제를 간단히 풀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말씀을 제가 지적하면서 다만 참고로 자료를 보는 것은 좋다, 그러나 이 기본적인 독트린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달리 이농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농현상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농촌을 떠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구기준을 더 상향시킨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陸堯相 朴柱宣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朴柱宣 委員 마침 오늘 저희 당에서 선거구 확정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금년 6월 30일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4830만 5525명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전체 지역구 숫자로 나누어서 한 지역구 당 평균인구가 몇 명이나 하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일 지역구 숫자가 변동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227개 지역구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6월 30일자 인구 기준으로 볼 때 최하한이 10만 6399명이 되는데 그 개념대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24개 선거구를 통폐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10만 6399명 인구에 미달하는 지역이 24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金容鈞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인구를 얼마 정도로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논의되어서는 안 되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를 몇 개로 할 것이냐를 먼저 확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 균형, 감시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예를 들면 93년도에는 우리나라 전체예산이 37조였는데 2003년도에는 115조 40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정

도로 예산도 많이 편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 기구가 갈수록 비대화되어 전체 행정공무원이 86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우리 국회는 32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행정부 대 국회를 보게 되면 0.57%로 국회직 숫자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에서 EU를 뺀 30개 국가 중에서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보게 되면 미국이 41만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일본이 24만 정도 되고 한국이 12만 명 정도 되어서 국회의원 한 사람 당 인구가 한국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양원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하 양원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숫자가 더 적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은 대개 6만 내지 7만, 8만 명 정도 인구 당 국회의원이 1명씩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12만 명 정도에 하나씩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경우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감시, 그다음에 입법부의 여러 가지 위상, 그다음에 국민소득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국회의원 숫자 전체를 얼마로 할 것이냐, 그 중에서 비례대표제를 얼마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지역구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확정되어야 만이 선거구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金容鈞 위원 말씀대로 인구를 10만 명 선으로 해 보자, 9만 명 선으로 해 보자는 개념을 여기에서 도입하게 되면 사실상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委員長 陸堯相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각 당의 의견을 우리가 수렴한 뒤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때 다시 논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되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줄이시지요.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치 개혁특별위원회에 여러 법률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아까 입법조사관이 보고하여 주신 대로 각종 법률이 많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 아시는 바대로 우리 정개특위 산하에는 3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소위원회에서는 바쁘시더라도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

서 빠른 시일 내에 각종 법률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千正培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千正培 委員 우리 특위 활동과 관련된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한나라당의 崔秉烈 대표께서 취임하시자마자 국회에 범국민정치개혁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매우 획기적이고 생산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여야 대표가 이 기구를 만들기로 바로 합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국민정치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 기구의 위상이나 권한범위가 어떻게 될지 물론 앞으로 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특위 활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위원회를 만들게 된다면 이것도 조속히 만들어져야만이 우리가 아까 논의한 시한을 맞추어서 10월 15일 이전에 선거제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치개혁안을 시행할 수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 이 문제는 여야 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장께서 직접 관심을 보여주셔야 할 사안으로 봅니다마는 우리 특위 차원에서도 위원장께서 범국민정치개혁위원회가 조속히 설치되고 활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委員長 陸堯相 잘 알겠습니다.

각 당 간사님들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의장께도 건의를 해서 그 특위 구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鄭義和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鄭義和 委員 오늘 제가 처음으로 영광스럽게 정치개혁위원이 되었으니까 회의록에 한 말씀 남기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 선거, 정치자금, 국회 등 개혁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선거는 4월 15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산해서 보면 언제까지 최소한 무엇무엇은 돼 가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야 될 것이고 요즘 많이 써먹는 로드맵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그와 같은 예정표가 만들어져 있어야 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千正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당에서 좀더 구체적

으로 연구해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朴柱宣 위원님과 金容鈞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朴柱宣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중등록제로 할 것이냐 정당명부제로 할 것이냐 등의 선거제도와 이것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함께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특위위원이 되었으니까 특위가 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陸堯相 趙培淑 위원님 여쭙어 보시지요.

○趙培淑 委員 정개특위에 여러 가지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제도, 정치자금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안을 내놓았고 저희 당에서도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개정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정치자금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9월에 들어가면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 특위활동으로 바쁘니까 8월경에 정치자금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陸堯相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앙관리위원회에서 정치개혁에 관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국회에 제출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안도 내놓지 않고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안을 내주어야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개혁적인 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이것이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빨리 제출해 달라는 촉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부분이 없으면 오늘의 의사 일정을 전부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出席委員(18人)

康奉均	金容鈞	金龍學	金宅起
金學元	陸堯相	朴柱宣	宋永吉
沈揆喆	李康來	李揆澤	李方鎬
李秉錫	全甲吉	全在姬	鄭義和
趙培淑	千正培		

○出席專門委員

수석전문위원 李 昌 熙
전문위원 安 秉 玉

안경률 · 오경훈 · 송광호 · 권오을 · 하순봉 ·
서상섭 · 박진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21일 회부됨

【報告事項】

○特別委員辭任및補任

委員會	辭任委員	補任委員	交渉團體
政治改革 特別	朴仁培	鄭義和	한나라당

(7월7일자)

○議案提出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김용균 의원 대표발의)

(7월2일 김용균 · 이원형 · 김덕규 · 김성조 · 김성호 · 김옥두 · 김중하 · 김태식 · 박상규 · 박상천 · 박인상 · 박주선 · 배기운 · 송석찬 · 심규철 · 이강래 · 이낙연 · 이상배 · 이승철 · 이우재 · 이재창 · 장성원 · 조용규 · 이협 · 천용택 · 최명헌 · 홍재형 의원 외 30인 발의)
7월3일 회부됨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7월16일 이주영 · 강삼재 · 권기술 · 김형오 · 엄호성 · 유시민 · 윤경식 · 이경재 · 이윤성 · 장성원 · 하순봉 의원 발의)
7월18일 회부됨

政黨法中改正法律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7월19일 정병국 · 전용학 · 박종희 · 오세훈 · 이경재 · 황우여 · 권영세 · 이재오 · 윤경식 · 전재희 · 원희룡 · 박근혜 · 남경필 · 안상수 · 조정무 · 윤여준 · 김홍신 · 이근진 · 강성구 · 안경률 · 서상섭 · 박진 · 하순봉 의원 발의)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7월19일 정병국 · 전용학 · 박종희 · 오세훈 · 이경재 · 황우여 · 권영세 · 이재오 · 윤경식 · 전재희 · 원희룡 · 박근혜 · 남경필 · 안상수 · 조정무 · 윤여준 · 김홍신 · 이근진 · 강성구 · 안경률 · 오경훈 · 송광호 · 이윤성 · 하순봉 · 서상섭 · 박진 의원 발의)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7월19일 정병국 · 전용학 · 박종희 · 오세훈 · 이경재 · 황우여 · 권영세 · 이재오 · 윤경식 · 전재희 · 원희룡 · 박근혜 · 남경필 · 안상수 · 조정무 · 윤여준 · 김홍신 · 이근진 · 강성구 ·

○請願提出

정당법개정에관한청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에관한청원

정치자금에관한법률개정에관한청원

(이상 3건 2003년6월3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공동위원장 최열로부터 李富榮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이상 3건 7월2일 회부됨